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6637 제출연월일: 2024. 12. 18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행정기관에 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, 문화체육관 광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,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에 시·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두어 지역문화 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던 것을, 앞으로는 지역문화정책 협의회와 시·도 지역문화정책협의회에서 지역문화 진흥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하고,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의 문화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단체장 중에서 지역문화정책협의회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역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협력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"을 "5년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후단을 삭제한다.

제6조의2의 제목 "(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·운영 등)"을 "(지역문화정책협의회의 설치·운영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협력위원회와 시·도협력위원회"를 "정책협의회와 시·도정책협의회"로, "심의한다"를 "협의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협력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"을 "정책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"으로 하며, 같은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협력위원회의 위원장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제1호의 위원(이하 "위촉위원"이라 한다) 중에서 호선하며"를 "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고"로 한다.

① 지역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 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문화정책협의회(이하 "정책협의회"라 한다)를 두고,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(이하 "시· 도"라 한다)에 시·도 지역문화정책협의회(이하 "시·도정책협의회" 라 한다)를 둔다.

제6조의2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소속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"을 "소속의 실장급"으로 한다.

- 1.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실장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 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
 - 가. 기획재정부
 - 나. 행정안전부
 - 다. 농림축산식품부
 - 라. 산업통상자워부
 - 마. 국토교통부
 - 바. 해양수산부

제6조의2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. 시·도의 문화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단체장 제6조의2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 - ⑤ 정책협의회는 필요하면 지역문화진흥과 관련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 게 할 수 있다.
 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하고, 시·도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

사항은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	제6조(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
수립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	수립 등) ①
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	
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	
역문화진흥기본계획(이하 "기	
본계획"이라 한다)을 제6조의2	<u>5년</u>
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협력위	
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	
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.	<u>.</u>
1. ~ 10. (생 략)	1. ~ 10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	4
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	
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	
한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	
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	
·평가하여야 한다. <u>이 경우 시</u>	<u><후단 삭</u>
·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·	<u>제></u>
시행·평가 시에 제6조의2제1	
항에 따른 시・도 지역문화협력	
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	
⑤・⑥ (생 략)	⑤·⑥ (현행과 같음)
제6조의2(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	제6조의2(지역문화정책협의회의
설치・운영 등) ① 지역문화의	설치・운영 등) ① 지역문화의

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 속으로 지역문화협력위원회(이 하 "협력위원회"라 한다)를 두 고,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 시 • 도 및 특별자치도(이하 "시 ·도"라 한다)에 시·도 지역문 화협력위원회(이하 "시·도 협 력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협력위원회와 시·도 협력위 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한다.
- 1. ~ 6. (생 략)
- ③ 협력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④ 협력위원회의 위원장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고 다 른 위원장 1명은 제1호의 위원 (이하 "위촉위원"이라 한다) 중 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 나 위촉한다.
-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

진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
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
속으로 지역문화정책협의회(이
하 "정책협의회"라 한다)를 두
고, 특별시・광역시・특별자치
시・도 및 특별자치도(이하 "시
•도"라 한다)에 시•도 지역문
화정책협의회(이하 "시·도정
책협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정책협의회와 시·도정책협 의회-----의한다.
- 1. ~ 6. (현행과 같음)
- ③ 정책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----
- ④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이 되고-----

- 1. 지역문화진흥 관련 분야에 | 1.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실장급 공무원 중 해

사람

- 2. 지역문화진흥과 관련한 분야
 의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
 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
 속하는 공무원
 <신 설>
-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⑥ 그 밖에 협력위원회의 구성 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하고, 시·도 협 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 조례로 정한다.

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가. 기획재정부나. 행정안전부다. 농림축산식품부라. 산업통상자원부마. 국토교통부바. 해양수산부

- 2. ----------- <u>소속의 실장급</u> -----
 - -----
- 3. 시·도의 문화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단체장
- ⑤ 정책협의회는 필요하면 지역 문화진흥과 관련한 분야에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회의 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 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하고, 시·도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

•도의 조례로 정한다.